|  |  |  |
| --- | --- | --- |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  (2018년 10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  1.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4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 회사는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하나일 경우 예외로 한다.  (1) 회사의 등록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2) 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타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3) 주식을 종업원지주제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사용하는 경우;  (4)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합병•분할 결의에 이의를 가지고 회사에 그 주식 인수를 요구하는 경우;  (5) 주식을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의 전환에 사용하는 경우;  (6) 회사의 가치를 수호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가 전항 제(1)호, 제(2)호의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전항 제(3)호, 제(5)호, 제(6)호의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회사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위임에 따라 2/3이상의 이사가 출석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제(1)호의 경우 매입일로부터 10일 내에 소각하여야 하며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양도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주식수가 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내에 양도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상장회사가 본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의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공개적인 집중거래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회사는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물로 인수하지 못한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은 이 결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공포한다.  2. 회사법상 자본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수정보완과 회사의 자주권 확대는 회사지배제도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유리하다. 국무원과 그 유관부서는 부대규정을 제정 및 완비하여 공개•공평•공정의 원칙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상장회사의 채무이행 능력 및 지속경영 능력이 유지되도록 독촉하여야 하며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 증권법 위반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히 조사처리하여 시장 리스크를 예방하고 채권자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的决定**  （2018年10月26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六次会议通过）  　　一、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六次会议决定对《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作如下修改：  将第一百四十二条修改为：“公司不得收购本公司股份。但是，有下列情形之一的除外：  “（一）减少公司注册资本；  “（二）与持有本公司股份的其他公司合并；  “（三）将股份用于员工持股计划或者股权激励；  “（四）股东因对股东大会作出的公司合并、分立决议持异议，要求公司收购其股份；  “（五）将股份用于转换上市公司发行的可转换为股票的公司债券；  “（六）上市公司为维护公司价值及股东权益所必需。  “公司因前款第（一）项、第（二）项规定的情形收购本公司股份的，应当经股东大会决议；公司因前款第（三）项、第（五）项、第（六）项规定的情形收购本公司股份的，可以依照公司章程的规定或者股东大会的授权，经三分之二以上董事出席的董事会会议决议。  “公司依照本条第一款规定收购本公司股份后，属于第（一）项情形的，应当自收购之日起十日内注销；属于第（二）项、第（四）项情形的，应当在六个月内转让或者注销；属于第（三）项、第（五）项、第（六）项情形的，公司合计持有的本公司股份数不得超过本公司已发行股份总额的百分之十，并应当在三年内转让或者注销。  “上市公司收购本公司股份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的规定履行信息披露义务。上市公司因本条第一款第（三）项、第（五）项、第（六）项规定的情形收购本公司股份的，应当通过公开的集中交易方式进行。  “公司不得接受本公司的股票作为质押权的标的。”  本决定自公布之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根据本决定作相应修改，重新公布。  　　二、对公司法有关资本制度的规定进行修改完善，赋予公司更多自主权，有利于促进完善公司治理、推动资本市场稳定健康发展。国务院及其有关部门应当完善配套规定，坚持公开、公平、公正的原则，督促实施股份回购的上市公司保证债务履行能力和持续经营能力，加强监督管理，依法严格查处内幕交易、操纵市场等证券违法行为，防范市场风险，切实维护债权人和投资者的合法权益。 |